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8 자 2024라19 결정 [건물명도]

전 문

신청인(선정당사자), 항고인 A

피신청인, 상대방 B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3. 14.자 2023자21 결정
2024. 10. 18.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선정당사자)과 피신청인은 2023.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277.08㎡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3. 10. 31.부터 2024. 10. 31.,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료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는 피신청인이 별도 부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선정당사자)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기간 중 또는 갱신계약기간 중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24. 3. 14. 신청인(선정당사자)과

피신청인 사이에 민사상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제소전화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법원은 당사자간의 계약 성립여부 및 불공정 여부를 확인할 의무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신청한 화해조서의 작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와 같이 거부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사상 다툼”에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래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은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려면, 적어도 장래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의 존부, 범위, 태양 등에 관하여 현실로 다툼이 있어서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소명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선정당사자)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현재 민사상 다툼이 없음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제소전화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0. 18.

재판장 판사 유효영 판사 김혜령 판사 홍유정

별지